

<별표 1-3 공무원 국외여비기준표>

(단위 : US\$)

구 분	등급(국가·도시)	숙박비/1박 (실비 상한액)	식비/1일	항공 운임 (실비)	일비/1일
(공무원)교수, 부교수	가	223	107	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 2항 (항공운임의 지급)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35
	나	160	78		
	다	130	58		
	라	85	49		
(공무원)조교수, 전임강사, 기타	가	176	81		30
	나	137	59		
	다	106	44		
	라	81	37		

※ 그 외 직급 지급 구분 :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에 따름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1항에 따름

나) 국내여비

(1) 적용범위 :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국내 출장비로 연구계획서에 포함된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에 한함

- 연구비 지원기관의 여비 기준이 학교 기준에 우선
-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학교 자체 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한 경우 또는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여비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교 여비규정 적용
-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

(2) 집행기준

- info21 시스템에 여비신청(출장 기간, 목적, 출장지, 출장 인원, 금액 산출내역 입력) 후 여비 지급신청서를 출력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

- 여비신청은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함

(출장비를 선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연구비 신청 후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별도 요청해야 함)

- 국내여비 지급기준 : 별표 2-1, 2-2 참조

- 공용외출비 지급기준 : 별표 3-1, 3-2 참조

- 출장 완료 후 제출해야 할 서류 : 출장 완료 후 1개월 이내 **출장보고서 및 아래의 출장 관련 증빙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

- 출장관련 증빙서류 : 출장보고서, 여비지급신청서, 교통비(자차이용 시 본교 산정 기준 요금에 따라 지급하며, 고속도로통행료 영수증, 하이패스 영수증 등 제출 / 자차이용 외 아래 교통수단, 이용 시 왕복 운임증빙 서류(탑승권 등)), 숙박비, 식비 영수증 중 하나 이상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관련 활동 증빙(학회 참가 증빙, 회의록 등)

* 지원기관 규정을 우선 적용함

(3) 여비 불인정항목

- 연구 관련 목적과 무관하거나 관련 증빙이 미비한 경우
- 비 참여연구원에게 여비를 지급한 경우
- 여비 지급기준을 부적정하게 적용한 경우
- 실비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빙자료를 구비 한 경우 차액
- 출장(출장비에 식비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집행 시 이중 집행으로 해당 금액

<별표 2-1 본교 국내여비 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숙박비	잡비	교통비
교무위원	110,000	70,000	* 교통수단 : 고속버스요금, 여객선운임료, 열차(KTX/SRT 포함)요금, 항공료 실비(제주도)에 한함 (단, 경비절감 차원에서 항공료가 KTX/SRT 기준 열차요금보다 저렴할 경우 항공편 이용이 가능하며 항공료는 실비로 지급) - 버스요금적용시 : 우등고속버스요금 기준 - 철도요금적용시 : KTX/SRT 일반실요금 기준(단, 교무위원: 특실기준) * 출장지까지의 교통수단 연계 시 상기 교통수단에 한하여 지급 - 서울/경기/인천의 지역의 경우 공용외출비 지급 기준으로 지급
부교수 이상	100,000	60,000	
조교수, 비전임교원	90,000	55,000	
학·석·박사과정생, 기타	80,000	50,000	
※ 숙박비 : 1박 기준이며, 주관기관(협회 등)에서 숙박 제공 시에는 지급하지 않음 ※ 잡비 : 1일 기준으로 식비 및 현지 교통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숙박이 없는 출퇴근 교육의 경우 잡비를 지급하지 않음)			

* 현지 택시비는 잡비에 포함됨

<별표 2-2 공무원 국내여비 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국내운임기준				숙박비(1박)	식비(1일)	일비(1일)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공무원) 교수, 부교수 이상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25,000	20,000
(공무원) 조교수, 전임강사, 기타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	20,000	20,000

<별표 3-1 수도권(서울C 기준)>

구 분	대 학	기 관	기 타
₩10,000	<서울지역 캠퍼스> 고려대, 시립대, 광운대, 동덕여대, 삼육대, 국민대, 성신여대, 산업대, 한양대, 서경대, 상명대, 동국대, 성균관대, 세종대, 덕성여대	동대문구청, 중랑구청, 의료보험공단(북부), 성북구청, 노원구청, 동대문운동장	청량리, 제기동, 종암동, 안암동, 월계동, 성북동, 월곡동, 신설동, 장위동, 장안동, 보문동, 공릉동, 태릉, 행당동, 신당동, 평창동, 장충동, 군자동
₩15,000	<서울지역 캠퍼스> 건국대, 연세대, 명지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숭실대	정부종합청사, 세종호텔, 광진구청, 롯데호텔, 국립보건원, 의보공단, 국회, 연금관리공단, 소방회관, 강동구청, 종합운동장, 서울지방병무청, 국립중앙도서관	광화문, 서울역, 소공동, 모진동, 광장동, 신촌, 서대문, 은평구, 마포 지역, 여의도 지역, 강남, 송파, 강동구, 사당동 지역
₩20,000	서울대, 광릉캠퍼스	대학교육협의회, 서울 국제우체국	영등포, 동작구지역, 신림동, 강서구, 목동지역, 과천
₩25,000	국제캠퍼스	김포공항	경기지역
₩30,000	인천대, 인하대	인천국제공항	인천지역